

제201회 영등포구의회
2017년도 제1차 정례회

『201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
동의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7. 6. 20.

行 政 委 員 會
專 門 委 員 崔 光 默

『201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
동의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 234호로 2017년 6월 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‘201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’에 대하여 영등포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(단위:천원)

안건 번호	사 업 명	사 업 내 용	출연금액
계			158,863
1	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	영등포구민회관 보수, 구조 보강	48,863
2		영등포구민회관 옥상방수	110,000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: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

5. 검토의견

○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1)에 따라 2017년도 영등포구 출연 사업에 대하여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서,

-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의하여 출연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며,

○ 사업내용 및 필요성을 살펴보면,

영등포구민회관 지하1층 천정 부분이 균열 및 변형으로 인해, 구조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, 보수 및 보강 공사를 위한 소요예산으로서 구민의 안전 확보 등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 사업비 출연 필요성이 인정됨.

○ 본 출연금 동의안은 사업에 대한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님에 따라, 출연금액의 규모는 추가경정 예산편성 절차에 의하여 예산액과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- 1)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참 고 자 료

1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2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1. 문화, 예술, 장학(장學)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2.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
제20조(재정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.

③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